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철도건설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이 제·개정되어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처분등기나 가등기가 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쳐지고 이후 가처분에 기초하는 등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철도건설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에 신설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호)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이전에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호)

4.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을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건설법」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 및”을 “한다),”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건설법」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및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로, “서면을 첨부하여”를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 및”을 “전기사업자,”로, “시행자”를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로, “서면을 첨부하여”를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登記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및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전기사업자, -----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 설>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